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2025년 7월 9일
제 1735호
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3000000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7/ 9 통권 173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9):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 '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복귀한 후에 이전지역에 다른 주택 취득시 특례적용 가능성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자기조정신고와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신고의무>

개념, 구분, 정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규모기준 (직전연매출 등)	직전년 매출수입 70억원이 상+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직전년 기준수입금액 이상 (농·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원)
조세특례 직접 적용	직전매출수입 3억원 이상 + 조세특례 적용	조특법상의 세액공제, 감면 및 소득공제 적용 사업자
조세특례 간접 적용	직전매출수입 3억원 이상 + 준비금 3억원 이상	해당 없음
신규사업자	설립 2년 이내 + 당년도 수입 3억원 이상	직전년도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는 제외)
불성실신고 (결정·경정)	직전년도 법인세 결정, 경정 받은 경우	직전년 소득세 추계결정·경정 받은 사업자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소급하여 3년 이내 합병 분할법인 등	해당 없음
해외 연관성	국외사업장 소유 + 외국자 회사 소유 등	해당 없음
외부조정 불필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5호 / 주간 28호

2025. 7. 9.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자기조정신고와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신고의무	표지
CEO의 경영산책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9):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 시 회계처리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 설문조사 대가로 지급하는 상품권 기타소득 신고 여부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글로벌 최저한세 - 지출 구조조정 주요 유형	9 10
직장인Survival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5가지 실천법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 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인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법규국조-79, 2024.11.28) -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8155(16) 특례 적용 가능 (서면법규재산-2095, 2024.09.06)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복귀한 후에 이전지역에 다른 주택 취득시 특례적용 가능함	13
세무정보	- '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9):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भाग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 운영의 관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2023) 원칙 중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OECD Publishing, Paris, pp.48-50.
요약 분석 인용함.

D.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역할 및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장려하여 가치, 양질의 일자리,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기업을 창출해 한다.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특유의 인적, 물적 자원에 경제적으로 최적의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직원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회사는 주된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그들에게 중요하다. 기업의 경쟁력과 궁극적인 성공은 투자자, 임직원, 채권자, 고객,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제공자들의 기여를 구체화하는 팀워크의 결과이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여가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 창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D.3. 종업원 참여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종업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정도는 국내 법률과 관행에 따라 다르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맥락에서 참여 메커니즘은 종업원들이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투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원 참여 메커니즘의 예로는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를 참여하게 하거나 특정 주요 의사결정에 종업원의 관점을 고려하는 업무 협의회와 같은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있다. 국제 협약과 국가 규범에서도 종업원의 정보, 협의 및 협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성과 향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스톡 옵션 또는 기타 이익 공유 메커니즘은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금 약정은 회사와 과거 및 현재 종업원간의 관계이다. 이러한 약정이 독립적인 기금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수탁자는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모든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D.4. 이해관계자가 기업 지배구조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성 있고 충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적시에 정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과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실천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D.5. 개별 근로자와 그 대표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불법 또는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우려를 이사회 및/또는 관할 감독기관에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임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판 효과 측면에서도 회사에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나 대표 기관을 통해 또는 회사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절차와 안전장치를 갖춘 내부고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는 이러한 개인과 대표 기관을 보호하고 이사회에 독립적인 사람, 종종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에게 기밀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불만 접수를 위한 기밀 전화 및 이메일 시설도 마련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는 대표 인력 기관이 회사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별 근로자가 단독으로 행동할 때 이를 배제하거나 보호가 취약해서는 안 된다. 적시에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법 위반과 관련된 불만에 대해 합리적인 부정적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당국에 정당한 불만제기(bona fide complaint) 신고 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 사례를 관련 국가 연락처(National Contact Point)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근로자나 기관에 대한 차별적 또는 징계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

D.6. 상장 기업의 채권자 권리 행사가 촉진되어야 한다.

상장 기업과 그 자회사의 채권 발행을 통한 금융이 확대되고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서 채권 보유자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기업의 회복력에 대한 중요성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채권 발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채권 수탁자가 채권자를 대리하고, 계약 불이행 사례를 검토하며,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배정된다. 수탁자의 활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정의되지만, 정책 입안자는 채무 불이행 전후에 수탁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채권자 권리 행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촉진될 수도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책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뚜렷한 유인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스투어드십 코드에서 서명자들이 회사채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투자자들이 채권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이니셔티브는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 가능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규약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발행자가 규약을 준수하는지 여부의 정의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정 가능한 재무지표(adjustable financial metrics)의 사용은 피해야 할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7일 (금)	6월 30일 (월)	7월 1일 (화)	7월 2일 (수)	7월 3일 (목)
미	달	러	(USD)	1357.60	1356.40	1353.60	1352.60	1359.40
일	본	엔	(JPY)	939.26	938.98	940.65	943.01	946.82
영	국	파운	(GBP)	1863.17	1861.86	1858.90	1858.88	1855.72
캐	나	다	(CAD)	995.02	991.41	994.86	991.10	1000.48
홍	콩	달	(HKD)	172.96	172.80	172.44	172.34	173.18
중	국	원	(CNH)	189.56	189.16	189.23	189.02	189.68
유	로	화	(EUR)	1587.10	1591.80	1595.42	1596.34	1604.02
호	주	달	(AUD)	888.82	886.61	891.07	890.01	895.37
싱	가	폴	(SGD)	1064.78	1063.34	1065.03	1062.65	1067.91
말	레	이	(MYR)	321.02	320.74	321.37	322.24	321.45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 시 회계처리

Q 안녕하세요. 자사는 신규 건설공사(건물) 관련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며 즉시 매도하였습니다.

해당채권 처분 시 발생한 매도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수수료포함)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수수료에서 차감된 선급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선급법인세 계정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신규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역개발채권 매입후 매도에 따른 차액은 취득원가보다는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수수료에서 차감된 선급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급법인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사의견이 타당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Q 용역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용역의뢰자 : 법인
2. 용역제공자 : 개인 (기술직에서 퇴사한 개인)
3. 용역내용 : 기술자문(교육, 실습지도, 프로젝트 지원)
4. 용역기간 : 18개월
5. 월단위 자문료 정액지급

상기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A 개인이 법인과 종속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신분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유직업 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 Q** 당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월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당기 장부에 로열티수입은 1월~12월까지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고, 외국납부세액은 1월~10월까지만 계상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시 1월~12월 외국납부세액이 모두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점(3/31)에 12월분까지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 A**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공제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 1~12월분이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참고)

설문조사 대가로 지급하는 상품권 기타소득 신고 여부

- Q** 본원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구매 및 전달은 외주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 최저한이라 과세는 되지 않지만 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상담실 백종훈 차장

상품권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들의 소비에서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접대의 용도나 복리후생 등의 차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세무상 주의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의 적격증빙 구비방법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음 등과 같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 할 수가 없다.

즉,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는 지출증빙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46012-11220,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해야 함

현행 법인세법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여

야한다.

즉,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거래에서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단계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권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상품권을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 접대비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그 사용시점에 법적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상품권 자체를 접대용도로 거래처 등에 직접 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품권 자체를 접대용도로 직접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구입시점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한다.

상품권은 사금융업체에 할인·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현금대용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산 처리하는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서면2팀-2664, 2006.1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2009.1.1. 이후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기	2021년
대상국	한국 등 143개국
주요 내용	국가별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
납부 주체	연결 매출 7억5000만 유로 (약 1조 1900억원)이상 기업
기대효과	다국적 기업의 최상위 법인 조세회피와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 중단

화

세금포인트 주요 활용처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GV 영화관 관람료 2000원 할인 • 국립자연휴양림 46곳 입장료 1000원 감면 • 제주~마라도·가파도 왕복 승선료 2000원 할인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 백화점
세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지출 구조조정 주요 유형

분류	내용
투자 우선순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 낮은 사업 재구조화 • 일반·범용목적 용자지원을 맞춤형·전문형 용자지원으로 전환
공공경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 내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 발주 • 관례적 시설비 지급을 사전점검을 통해 필수요소에 한정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세·재정지출 간 중복지원 정비 • 현장의 실소요를 재점검하여 집행방식·사업규모 조정



밸류업 동참 3대 분야별 8종 인센티브

세무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종 세정지원 •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사유
상장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 거래소 추가, 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 불성실공시 거래소 조치 유예
홍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5가지 실천법

1.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세요

자기효능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체험에서 자라납니다. 너무 큰 목표보단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작은 과제를 설정하고, 완수하는 경험을 반복해보세요. 성취는 자신감을 만드는 연료입니다.

2. 비교보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남과의 비교는 쉽게 자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더 잘했는지, 어디서 덜 흔들렸는지를 기록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패를 '연습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자기효능감은 실패를 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는 태도가 쌓이면서 진짜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는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입니다.

4.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화하세요.

"난 안 돼"보다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하면 좋아질 거야"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곧 태도가 됩니다.

5. 성장했던 순간을 스스로 상기하세요.

"내가 저걸 해냈었지"라는 기억은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과거의 성취나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한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의 나를 믿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여러 번 해낸 사람입니다.

최신 판례 예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법규국조-79, 2024.11.28

■ 질 의

- 내국법인이 버뮤다 소재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카타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하여 해당 SPC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카타르 현지에서 위 천연가스 개발투자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조세 감면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갑법인’)이 버뮤다 소재 특수목적회사(‘쟁점SPC’)를 통해 카타르 소재 A법인에 지분투자하고, 쟁점SPC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쟁점배당소득’)을 재원으로 갑법인에 배당을 하는 경우로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카타르 현지법에 따라 그 조세가 감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갑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갑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운영 방식 및 존속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서면법규국조-461, 2024.06.27

■ 질 의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복귀한 후에 이전지역에 다른 주택 취득시 특례적용 가능함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16> 특례 적용 가능

서면법규재산-2095, 2024.09.06

질 의

-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었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16> 적용 여부

회 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결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기준법규소득-54, 2024.08.14

질 의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 위 급여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소득법§12(3)머.)

질의

-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의 의미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끝.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 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인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별도 신청없이 9월 25일까지 직권으로 2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8만명이다.

이에 더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5만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 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

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및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 상법 개정안 심사 착수... '3%룰' 등 도입 두고 여야 줄다리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화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이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이사회회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 적용과 집중 투표제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번 양당이 상법 개정을 논의할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해당 두 가지 사안은 재계에서 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라며 "'3%룰' 등이 도입되면 외국계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계가 우려하고 있기에 재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세청, 2025. 7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사이트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금융·재정·세제

- '25.7.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시행
- ※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25.12월 말까지 적용



** (혼합형)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 '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탁·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2. 교육·보육·가족

- '25.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
 -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25.7.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 도입
 -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3. 보건·복지·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강화
 - * (지자체)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 '25.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
 - *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25.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 *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 '25.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 (○ 주요내용 :)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들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4. 문화·체육·관광

- '25.7.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0%)(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
 - *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천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5. 환경·기상

- '25.6.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경보도 제공(중전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
 - * '심각'단계 : 하천 범람 직전 위험 수위인 계획홍수위 도달 시(대피 등 즉각적 안전조치 필요한 상황)
- '25.9.2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26년부터 단계적 상향**
 - * 연간 1만톤 이상 페트 생산자 →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
 - ** 2026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25.9.26.)
 - * (○ 주요내용 :) 전력망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사업지원 등)

- '25.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원,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원
 - **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 지속 수혜 가능

- '25.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
 - *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7. 국토·교통

- '25.6.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이상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된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 (대상)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25.하반기)
 - * 낮은 화면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8. 농림·수산·식품

- '25.6.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가능
 - **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ha),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1→2ha), 관광농원(2→3ha)
- '25.6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
 - *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 축소(10 → 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확대(3→10마리, '25.7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25.8월)
 - * 안내 의무항목 :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9. 국방·병무

- '25.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하여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
 - * (기존) 전공 관련 38개(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가능
→ (개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모든 특기 83개(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10. 행정·안전·질서

- '25.6.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25.7.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p 상향,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5%p 상향,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 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 '25.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 (기존) '모바일 신분증', '삼성윌렛' → (추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 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발췌)

◎ 기획재정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 (대상)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변경내용)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 추진배경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퇴직소득 과세 해약환급금 대상에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추가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5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추가됩니다.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추진배경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 주요내용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 추가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6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합니다.

- ❖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합니다.
 - *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며,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추진배경 : 세원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 (대상용역)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 ①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 ②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 ③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 ④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이후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환경부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25. 2.)에 따라, 배출권거래증개업이 도입됩니다.



- ❖ 시행령 개정 이후 배출권 위탁거래 중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위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위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추진배경 :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 주요내용 : 그간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에서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의 편리성 향상
- 시행일 : 2025년 11월8

◎ 관세청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결정 공개율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합니다.

-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업비밀 등 사유로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제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 추진배경 : 품목분류 결정 공개율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
- 주요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때 비공개요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신설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달청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관급철근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확보, 가격경쟁 등을 위해 관급철근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 다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

- ❖ 먼저,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설정하여 기업의 생산능력 대비 과도한 수주 쏠림 발생을 방지하여 철근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 ❖ 또한, 관급철근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납품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 시 3일 이내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철저하게 품질관리 합니다.
- ❖ 아울러, 가격변동성이 큰 철근의 특성상 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을 제외하되, 수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 담합근절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철근 계약방식 MAS로 전환

- 추진배경 : 철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안정적 공급과 품질확보
- 주요내용 : 철근조달 계약을 기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MAS계약으로 변경
- 시행일 : 2025년 5월 15일(종합쇼핑몰 등재는 철근업체 계약체결 이후) 11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됩니다.

-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②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주담대 평균 상환기간, 만기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중 등을 고려

※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 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주기형]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

③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금리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추진배경 : 가계대출 상환능력 심사시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도 0.75에서 1.5%로 상향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5천만원→1억원)

○ 추진배경 : 2001년 이후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2025. 1. 21.)

○ 주요내용 :

-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 별도보호한도(퇴직연금(DC, IRP 등)·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개정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 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1년단위), 분기·반기보고서 : 회사의 재무, 임원, 주주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정기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 발생 시 그 제출기한 까지)

※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상장법인 등에 자본시장법(§161)이 규정한 사항 발생시 관련 내용 기재

※ 기존에는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가 가능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5%를* 위반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하게 된 경우 등에 보유상황·목적 등을 공시

■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 추진배경 :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신설
-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를 공시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 시행14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합니다.

- ❖ 아래 기업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 평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① (신청대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
 - ② (결격사유)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청 불가

- ❖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하여, 800점 이상 획득시 우수기업 선정(1천점 만점)

⇒ 매년 6.1일부터 3주간 신청 → 7-8월 평가 → 9월말 우수기업 선정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

- 추진배경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3년 유예(9년간의 자유선임 기간 보장)
- 시행일 : 2025년 5월 20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까지 포함하여 채무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그간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어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 ❖ 2025년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하여 One-Stop으로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어 제한·단전되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채무원금 감면(최대 90%)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 ❖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 시행일 : 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 시행

- 추진배경 : 전기요금과 금융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 주요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통합하여 채무조정 실시
- 시행일 : 2025년 9월 19일16

◎ 보건복지부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합니다.

*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창업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 ❖ 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②민간시장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적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 ❖ 탈수급 후 민간 취·창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재수급 및 유사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금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지급

- 추진배경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신설
- 주요내용 :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 시행일 : 2025년 10월 중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024. 10. 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 ❖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육아휴직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자발적 퇴사시에도 사후지급금(50%)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2025년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 또한, 빈일자리에 종(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확대 내용>

구분	현행 지원요건	지원확대 요건
지원요건 확대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 *졸업예정자 참여불가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지급기간 변경	· 유형II* 청년근속인센티브 18·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 유형II 청년근속인센티브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
- 주요내용 :
 - (지원 규모 확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 (인센티브 조기 지급) 6·12·18·24개월 4회차 근속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단계적인 근속 유도
- 시행일 : 2025년 5월 1일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 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를 위해,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금년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추진배경 : 비상상황에 따른 대피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할 필요
- 주요내용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그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②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 ③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 ④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위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추진배경 : 타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중복되는 교육은 감면하는 규정을 관리 감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

- 주요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30%입니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확인(<http://culture.go.kr/deduction>)
- ❖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하며,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합니다.
- ❖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단,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



-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
-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율) 30%
-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시행일 : (소득공제 적용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①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 ❖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을 선호하는 최신 창업 경향을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인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개정하였습니다.
- ❖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사항은 2025년 9년 26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무공간에 기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추진배경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책임자 지정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 시행일 :
 -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등: 2025년 8월 1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등: 2025년 9월 2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합니다.

- ❖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만톤 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합니다.
 -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polyethyleneterephthalate)
- ❖ 또한, 현재 3%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을 2026년부터 10%로 하고,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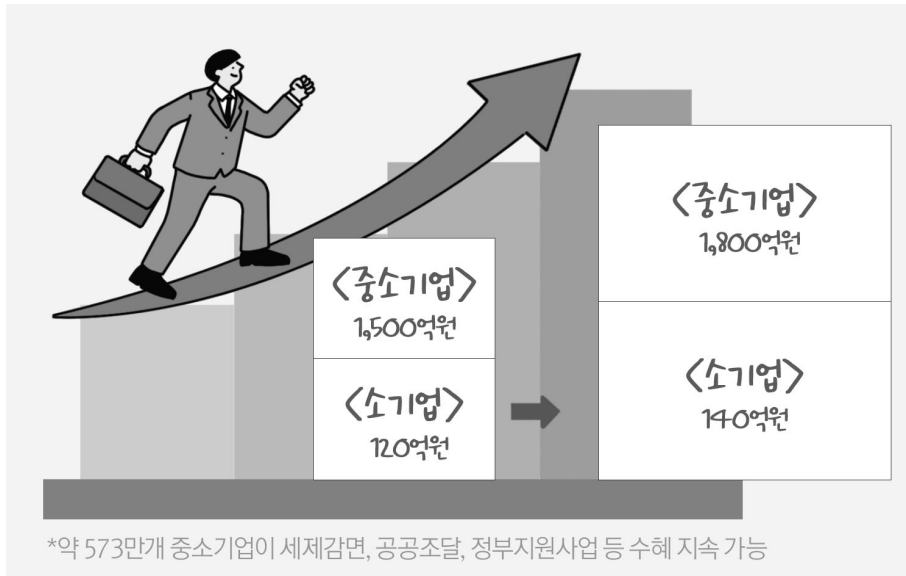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목표율 확대

- 추진배경 :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 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의무대상) 기존 '연간 1만톤 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자' → 변경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
- 시행일 : 2025년 9월 26일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 생산원가 급증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상향 개편합니다.
 - 매출기준 : (중소기업) 1,500 → 1,800억원 / (소기업) 120 → 140억원
 - 매출구간 수 : (중소기업) 5 → 7개 / (소기업) 5 → 9개
 - 매출 상한 확대업종 : (중소기업) 16개 업종(현행 대비 200~300억원 확대)
(소기업) 12개 업종(현행 대비 5~20억원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 예정입니다.

- ❖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①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고, ②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③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④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①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②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법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④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 ❖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①일률적인 기술의 수출 승인절차를 수출유형에 따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②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③기업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 중심 기술 유출의 지속적 증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 기술보호 및 관리체계 개선 -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등
 - 국가핵심기술 관련 벌칙규정 및 기업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 ‘바다봄’(<https://badabom.go.kr>)이 2025년 12월 구축 완료됩니다.

- ❖ 그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3개 시스템*에 각각 접속하여 기술인증평가, 기술거래 등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스템, 창업투자정보 시스템
 -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사업화 시스템 3종을 통합하여, 바다봄 사이트



를 통해 원스톱으로 기술인증평가와 기술거래 신청이 가능하고, 창업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제공되는 연구 데이터와 ‘바다봄’ 사이트 간 정보를 연계하여 연구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정보를 나라장터에 연동하여, 신기술 보유기업이 공사실적을 쉽게 관리하고 조달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 개선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KIMST 사업화 시스템 통합 및 통계정보 관리 고도화 필요
- 주요내용 :
 - KIMST 사업화 시스템 3종*을 통합하여, 원스톱 신청 체계 구축 및 각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R&D 성과 상용화 강화
 -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스템, 창업투자 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제공되는 연구 데이터와 바다봄 간 정보연계로 통합 DB 설계 및 통계 서비스 개발
 -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정보를 나라장터에 연동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의 공사실적 관리 지원 및 조달 입찰 시 활용
- 시행일 : 2025년 12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향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소상공인·소기업이 사설향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될 경우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 ❖ 기존 사설향로표지 위탁관리업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었으나,
-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소기업은 60일, 소상공인은 90일로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일정기간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 향로표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향로표지법제26조제1항4호 개정(2025. 10. 시행예정) 및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 추진배경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향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소기업 60일, 소상공인 90일)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
- 시행일 : 2025년 10월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합니다.

- ❖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합니다.
- ❖ 또한,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여,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확대합니다.

이로써, 전체 804만 中企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속 수혜가 가능해집니다.

■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액 기준 현실화
- * 국내 GDP 디플레이터 17%, 생산자물가지수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

○ 시행일 : 2025년 말

<참고.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 개편 업종>

중소기업 범위조정 업종: 44개 중 16개

(단위: 억원)

표준산업분류	중기업 범위기준 조정업종	현행	개편안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	1,800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000	1,200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C3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600	800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조정 업종: 43개 중 12개

(단위: 억원)

표준산업분류	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업종	현행	개편안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	140
C24	1차 금속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	80	100
K	금융 및 보험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6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30	40
L	부동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	15
I	숙박 및 음식점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AI 챗봇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합니다.

- ❖ 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 (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규제 정보제공(설명회)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관세 정보제공: 수출 품목 관세율, 원산지 판단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등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 *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상담 메뉴 신설
 - ** 애로사항 접수나 정부지원 요청건은 애로신고센터 및 관세대응지원본부 연계
 - 관세 심층상담: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심층 상담 요청 시, 관세법인과 연결해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 전문상담: HS-Code 품목분류, 기업 수출 제품 원산지 간이분류, 관세정보 제공 등

■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추진배경 : 美관세 부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애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규제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 AI 챗봇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시행일 : 2025년 6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K-스타트업 센터(KSC) 활성화합니다.



- ❖ (GBC) 관세 피해기업 입주 신청 시 최고 수준 가점 (5 → 10점) 부여하고, GBC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관세 피해기업을 우대합니다.
 - 입주 대기시에도,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 및 공유좌석 단기 사용 (최대 120일) 허용 등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
- ❖ (KSC) 통상장벽을 피해 해외 직접 진출*을 희망하는 서비스 수출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현지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 * 수출 스타트업 중 27%만 해외 거점을 마련하여 직접 진출중 (KITA, '24.5)
 - K-스타트업 센터(KSC)를 통해 현지 법인설립, 현지 파트너 발굴, 해외 인력채용 지원 등 지원 확대
 - 특히, 신설되는 'KSC 실리콘밸리'에서 AI 등 신산업 분야 AC·VC 연계, 글로벌 테크 기업 협업 등 집중 지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

- 추진배경 :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용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 센터(KSC) 활성화
- 주요내용 :
 - (GBC) 관세 피해기업 입주 신청시 가점 부여(5 → 10점) 등 관세 피해기업 우대
 - (KSC)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 발굴, 해외 인력채용지원 등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5년 4월

◎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혁신기술만 있으면 공장과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협업 기업수를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R&D 기업들이 납품 여건 및 기업 상황에 맞춰 생산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W 혁신기술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융합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융복합 SW 혁

신제품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 ❖ SW 기술이 적용된 물품 종류마다 개별로 혁신제품을 지정받을 필요없이 기존 지정된 혁신제품에 규격만 추가하면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요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회를 확대합니다.

- ❖ 기존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된 단가계약 체결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실증 시범구매 참여를 허용하고, 5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구매한 제품은 추가 시범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혁신제품 제도 숨은 규제 개선

- 추진배경 : 혁신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
- 주요내용 :
 - 협업체로 참여 가능한 제조기업 수를 당초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확대 운영
 - 융복합 SW 혁신제품은 동일 세부품명이 아니어도 규격추가를 허용
 - 단가계약 제품에 대해 해외실증 시범구매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고 소액 시범구매 제품은 추가 시범구매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5년 6월 10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이하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 시 위탁구매 해주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상사업) R&D 중심형 협업사업,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표준(5개)

- ❖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 추진배경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매실적 개선 등을 위해, 업계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의 대상금액 상향 건의
- 주요내용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개정) 위탁구매 대상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25년 6월 16일

◎ 특허청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서류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조정(현행 2개월 ~~3~~개정 30일)으로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 ❖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 ❖ 한편, 정보제공제도 및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 연장(30일) 제도 등을 통해 제3자의 견제시기를 충분히 보장하며 상표등록제도가 균형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 추진배경 : 심사종결기간 단축을 통한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
- 주요내용 :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건부터 적용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올해 11월부터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신규성이 없거나 선출원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으면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패션·잡화 등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서는 신규성과 선출원 심사 없이 방식 요건 및 한정적인 실제심사로 신속하게 등록

- ❖ 일부심사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절차 없이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의 심사강화 등 디자인제도 개선 시행

○ 추진배경 :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 및 정당권리자의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 (일부심사강화) 일부심사출원에 대해서는 신규성·선출원 거절이유에 대해 거절 불가 →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거절 이유는 거절 가능
- (이의신청)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또는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디자인권 이전청구) 도용된 디자인권을 법원에 이전청구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

○ 시행일 :

- 2025년 11월
- (일부심사 강화 및 이의신청)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된 디자인출원부터 적용
- (디자인권 이전청구) 개정법 시행 이전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2025. 10. 2.부터 시행)

❖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아래의 부당특약은 곧바로 무효가 되고,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

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 추진배경 :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규정이 「하도급법」에 없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음

○ 주요내용 : 「하도급법」 개정으로 아래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됨

①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 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 그 외 「하도급법 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상 부당특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 →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입증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 시행일 : 2025년 10월 2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근로자 숙소의 범위가 확대되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됩니다.

❖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

여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도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해당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설치 가능

❖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 농지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등 입지규제 완화 필요

○ 주요내용 :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 시행일 : 2025년 6월 2일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하여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추진배경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활성화 및 제출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 신설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란 신설
- 주민등록번호란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로 변경



- 성별 기입란 삭제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 ❖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합니다.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추진배경 : 동일 설비 증설이 잦은 반도체 공장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신규 설비 가동이 지연되어 산업 경쟁력 약화
- 주요내용 :
 - (전담직원)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에서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 직원을 지정
 - (우선심사) 지정된 전담 직원은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유도
- 시행일 : 2025년 5월 30일